

(參 照)

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880
------------	-----

2000. 2. 16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(법률제6002호 - '99. 8. 31) 및 동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16672호 - '99. 12. 31)의 개정예 의하여 지방의회 운영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조례 제1조는 목적을
- 동 조례 제2~3조는 정례회 회수를 년2회로 하고 회기를 35일 이내로 하며
- 동조례 제4조에서는 집회시기를 총선을 실시하는 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「 7월 5일 」 과 「 12월 5일 」 에 집회하고
- 동조례 제5조에서는 심의 의결할 안건으로
 -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 행정사무감사 」 와 「 결산승인안 」 을
 - 제2차 정례회에서는 「 예산안 심의 」 의결을 규정한 것으로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복잡하고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